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3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교부세의 재원 확대	2
2. 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5.
3. 회부연월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의 재원 확대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5%p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u>1,924</u> 에 해당하는 금액	1. ----- ----- ----- ----- ----- ----- <u>2,424</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5극3특¹⁾의 국가균형성장 및 복지지출 급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보통교

1) 5극은 수도권·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 3특은 강원권·전북권·제주권을 의미

부세 조정률(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비율)은 2022년 86%에서 2025년 72.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지방교부세 조정률 현황]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조정률	86	81.6	75.0	72.2

주: 조정률 = 교부액 / 재정부족액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5%p 높이는 것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은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국세의 5%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GDP 현황]

(단위: 조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관리재정수지	-112.0	-90.6	-117.0	-87.0	-104.8
국가채무/GDP	41.1	43.7	45.9	46.9	46.0

주: 결산기준

자료: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따라서, 단순히 지방교부세 재원에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방교부세 재원확대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사업 이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현행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의 몫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흡산하여 교부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접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등).

현행	개정안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 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 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 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u>광역시</u> 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 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u>특별시 또는 광역시에</u> 교부 한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 ----- ----- ----- ----- . <u>다만, 특별시의</u> ----- ----- ----- <u>특별시의</u> ----- ----- ----- <u>특</u> <u>별시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 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 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 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 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 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 청) ①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시장 또는 군수</u> 인 경우에는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 <u>시장</u> <u>· 군수 또는 구청장</u>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부터 적용한다.	

현행은 시·군의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해당 시·군에 직접교부하고 있으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 받지 못하고, 각 자치구 몫을 합산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교부받은 후, 「지방재정법」²⁾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처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은 취지는 대도시 내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광역자치단체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1., 2. (생 략)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에 기초하여 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여 자치구의 독자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대도시 내의 자치구는 단일 생활권인 시·군의 행정·재정체계와 달리 생활권 경계가 자치구 간 명백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³⁾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2>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4.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6.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에 따라 시·군의 경우는 청소·생활폐기물 사무, 도시·군계획관련 사무, 도로개설·유지·관리사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나, 자치구의 경우는 해당사무 등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문제는 지방행정 체계, 사무범위, 지방세 운영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을 반영하여 광역시의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게 되면, 자치구 간의 재정력의 격차가 현행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각 광역시는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조례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교부하는 도시에 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만을 지정하고 있는데, 특별시 역시 이와 같은 직접교부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 지방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대도시의 자치구는 생활권 경계가 모호하여 행정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자치구 직접 교부는 큰 폭의 재원 변동을 유발하므로 광역시-자치구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